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집행계획에 재정적 조치 포함 의무화〉
■ 김승수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907호)

2024. 11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서 기 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승수의원 등 12인
2. 제 안 일 : 2024. 8. 16.
3. 회 부 일 : 2024. 8. 1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소방장비 교체,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에 포함되는 사항에 소방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시·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함)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과 관련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7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. ~ 8. (생략) ③ ~ ⑥ (생략)	제7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에----- 4. ~ 8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</u>

② (생략)	<u>도별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--------------	--

1.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 관련 예산 편성 의무화

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(제1조) 소방청장에게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(제7조제1항)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(제7조제3항),

시·도지사에게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(제8조제1항).

한편, 기본계획에는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

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,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, ③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, ④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, ⑤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, ⑥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⑦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⑧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(제7조제2항).

그러나 소방장비 관리,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방서비스의 질과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추정됨.

구체적으로, 소방청이 조사한 전국 1,212개 시·도 소방청사¹⁾ 차고의 매연배출설비²⁾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, 2024년 7월 현재 전체 차고의 88.1%인 1,608개 소에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나,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치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³⁾.

1)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“119안전센터” 청사를 의미하며,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“119특수대응단”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119구조대” 포함

2) 매연배출설비 설치 사업 등 소방청사의 관리(청소)는 시·도 소방청사 운영 및 소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관리함(별도 국비 지원 없음)

3) 소방청사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가 100% 완료된 지방자치단체(7개 지자체)가 있는 반면, 설치율이 60%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4개로 나타남.

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소방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의 우선 순위,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.

<시·도 소방청사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 현황>

연도	2021	2022	2023	2024(7.1. 기준).
설치율	34.8%	53.9%	77.9%	88.1%

(자료: 소방청)

<2024년 시·도 소방청사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 현황>

('24.7.1. 기준 / 단위 : 개소, %)

시도	대상(a)	설치(b)	설치율 (b/a) × 100	설치계획			
				'24	'25	'26	미정
합계	1,212	1,068	88.1	56	12	4	68
서울	121	118	97.5	2	1	0	0
부산	65	64	98.5	0	1	0	0
대구	52	50	96.2	0	0	0	2
인천	68	67	98.5	1	0	0	0
광주	28	28	100	0	0	0	0
대전	28	28	100	0	0	0	0
울산	27	15	55.6	3	3	2	0
세종	11	11	100	0	0	0	0
경기	221	212	95.9	7	0	0	2
강원	83	20	24.1	0	0	0	63
충북	46	46	100	0	0	0	0
충남	82	82	100	0	0	0	0
전북	56	56	100	0	0	0	0
전남	71	28	39.4	38	5	0	0
경북	107	102	95.3	2	1	2	0
경남	93	93	100	0	0	0	0
제주	26	24	92.3	1	0	0	1
창원	27	24	88.9	2	1	0	0

(자료:소방청)

또한, 시·도 소방청사 관리도 시·도별로 조례나 훈령, 자체 규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, 기본적인 소방청사 관리 업무라 할 수 있는 청사 청소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,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는 경우, 주 2-3회 용역업체 직원이 해당 관서를 방문해서 청소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⁴⁾.

<시·도별 소방청사 청소 운영 현황>

구분	소방서	안전센터	비고
공무직 또는 기간제	14	1	공무직/기간제 근로자 상주
자체 청소		13	소방공무원이 청소
용역	4	4	주 2-3회 용역업체 직원 방문 청소
계	18	18	

(자료: 소방청)

한편, 시·도지사가 수립·시행하는 집행계획에는 이 법 시행령에 따라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,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, ③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·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,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

4) -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세 현황은 [참고 1] 참조

-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소방청은 24시간 상시근무하는 소방무원의 보건위생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이 직무(화재·구조·구급출동 및 재난대비 훈련 등 소방 본연의 업무)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사의 관리가 중요하나,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의 우선순위, 재정 여건(재정자립도 등)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 품질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.

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영 제4조 제2항)⁵⁾⁶⁾.

개정안은 기본계획에 소방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시·도지사에게 연도별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임.

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므로 재난현장의 참사에 빈번히 노출되어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수준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, 소방청사의 특성 상 청사 안에 소방차량 차고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차량/장비 시동 점검⁷⁾ 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, 소방관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

5) 「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

제4조(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안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"집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1. 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
2. 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3.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·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

6)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「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, 실제로 집행계획에 소요경비 및 예산편성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.

7) 소방청은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, 「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(소방청훈령 제330호)」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소방장비 및 소방자동차 점검(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, 주간 점검일지 등에 따라)에 따라 차량 및 장비 시동점검을 1일 2차례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.

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보임.

다만, 현행 법령과 제도 하에서도 소방청은 “제2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2021년-2025년)”을 수립하면서 소방기관 노후청사 개선 및 보건·복지 환경 조성을 19개 정책과제 중 1번(과제 1-가)으로 선정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소방관서의 운영 개선 사항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⁸⁾.

개정안에 대해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어 시·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책무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시하여 재원확보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다만, 소방청은 소방청사의 관리(청소)는 시·도 소방청사 운영 및 소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관리하고 있고, 기본계획에 ‘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’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, 법률에 ‘소방관서 운영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51

8) 제2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2021년-2025년)의 추진체계 상세 내용은 [참고 2] 참조

참고 1

시·도 소방본부별 소방청사 청소 운영 현황

(자료: 소방청)

○ 시·도별 조례나 훈령, 자체 규정*에 따라 운영

* 공무원 운영 규정, 공유재산 관리조례,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등

(‘23.12.31. 기준)

시·도	소방서	안전센터	비고
서울	공무직 또는 기간제	용역*(‘20년 시행)	* 주 3회 방문 청소
부산	공무직	자체 청소	※ 센터 전체 용역 추진 예정(‘24년)
대구	공무직	자체 청소	
인천	공무직 또는 기간제	공무직 또는 기간제*	* 소방서별 1명 (외곽센터 순환식 근무)
광주	공무직 또는 기간제	자체 청소	
대전	용역	용역*(‘22년 시행)	* 주 2회 방문 청소
울산	공무직	자체 청소	
세종	기간제	자체 청소	
경기	공무직	자체 청소	
강원	공무직	자체 청소	
충북	공무직	자체 청소	
충남	기간제	용역*(‘23. 8월 시행)	* 주 2회 방문 청소
전북	용역	자체 청소	
전남	용역	용역*	* 소방서별 방문 횟수 다름
경북	공무직 또는 기간제	자체 청소	
경남	공무직 또는 기간제	자체 청소	
제주	공무직 또는 기간제	자체 청소	
창원	용역	자체 청소	

(자료: 소방청)

비전

최고 품질의 소방서비스 제공

목표

명예롭게 헌신하는 소방 여건 조성

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

4대 추진전략

19개 정책과제

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

- 소방기관 노후청사 개선 및 보건·복지환경 조성
- 상호협력적 기관발전을 위한 소방직장협의회 활성화
- 양성평등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
- 안정적인 자녀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
- 현장임무 수행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운영 개선

몸과 마음이 건강한 소방관

- 소방 의료지원체계 구축
-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체계 활성화
-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
-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
-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과학적 보건안전정책 추진

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활동

- 원활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마련
-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도입
- 안전문화조성 및 현장안전관리의 학문적 정립
- 소방서의 주체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

자긍심있고 명예로운 소방 像

-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 현실화
- 소방맞춤형 보육 지원제도 강화
- 퇴직 소방공무원 제2의 인생 지원
- 재해보상 전문 지원체계 확립
-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내실화